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운영 세칙(안)

제정 2024. 9. 1. 지침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14조에 따라 ‘공학대학 무전공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학대학 무전공학과’란, 학부·학과·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 진급 시 공학대학 소속의 학부·학과·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모집단위를 말한다.
- ② ‘학과배정’이란,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재적생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학대학 소속의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2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직, 정원 등) ① 공학대학 무전공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 ② 학과장은 공학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공학대학 무전공학과는 학과사무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학대학이 조정·지원한다.
- ④ 공학대학 무전공학과의 학사 관리를 위하여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⑤ 공학대학 무전공학과의 모집정원은 60명(2025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10%), 변동 가능

제5조(운영위원회) ① 효과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당연직·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고 학장·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공학대학 소속 각 모집단위별 1인의 전임교원을 해당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입학 및 진로지도
 3. 지도교수의 선정 및 진로지도, 상담
 4. 학과배정
 5. 기타 학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학과배정 대상) ①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배정 대상 학과 및 전공은 [별표1]과 같다.

② 학과장은 진급하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학과배정 대상 학과·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1. 학과 : 모집단위로서 입학정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
2. 전공 : 공학대학 학부 내 소속 전공으로서 「강원대학교 학부 내 학생 전공 배정 지침」 제5조에 따라 전공별 배정정원이 책정되어 있을 것

제7조(학과배정 희망조사) ① 학과장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내에 각 소속 재학생을 대상으로 [별표1]의 학과배정 대상 학과 및 전공 중에서 희망하는 학과·전공을 조사하여 학장(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장(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학과배정 대상 학과·전공에 미리 제공하여 학과배정 정원에 반영하도록 요청한다.

제8조(학과배정 정원) ① 매학년도 2학기에 학과배정 대상 학과·전공의 장은 진급하는 학년도의 입학정원 또는 전공 배정정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150 이상에서 학과배정 정원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학과배정 정원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절상한다.

② 학과배정 대상 학과·전공의 장은 학과배정 정원을 정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과장이 제공한 학과배정 희망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1학기 학과배정 정원은 전년도 2학기의 학과배정 정원에서 각 학과·전공별로 실제 배정된 인원을 제외한 잔여 정원을 적용한다.

제9조(학과배정 신청) ① 학과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재적생을 대상으로 신청·접수한다. 다만, 정규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후부터 성적 확정일 이전에 휴학한 학생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1. 정규 학기 2개 학기 이상 이수할 것
2. 해당 학기 계절수업 성적 확정일까지 27학점 이상 취득할 것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초 학과배정 대상이 되었던 휴학생이 병역의무 수행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강과목을 철회한 경우에는 학과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학장(위원장?)은 학과배정 신청 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하되, 그 마감일은 매학기 종강일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④ 학과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재적생은 [별표 1]에서 정한 학과·전공 중 서로 다른 학과·전공을 본인이 원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반드시 10지망까지 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과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중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과배정) ① 학과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른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한 학생이 1지망으로 신청한 학과·전공부터 순차적으로 학과배정을 실시한다.

② 학과배정 정원보다 신청한 학생 수가 많은 경우,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점수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그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앞선 순위에 있는 학생부터 배정한다.

③ 학과장은 1지망 신청 학과·전공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2지망부터 10지망까지 우선 순위에 따라 학과배정을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점수를 산출할 때에는 매 학기 정규 및 계절 수업 성적을 모두 포함한다.

⑤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배정 학과·전공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조 제4항에 따른 학과배정 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중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
2. 제9조 제4항에 따른 학과배정 신청서에 지망하는 학과·전공을 10지망까지 기재하지 않거나, 동일한 학과·전공을 여러 지망에 중복 기재하여 제출한 학생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과배정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망한 학과·전공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

제11조(학과배정에 따른 소속의 변경) ① 총장은 학과배정이 완료된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재적생을 진급 대상 학년도부터 학과배정 학과·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 재적생에게 학과배정 학과·전공 소속이 명기된 학생증을 재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재적생은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과배정 학과·전공을 기본전공으로 보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학과배정에 따른 학점인정) ① 학과배정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학과배정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 영역 학점으로 인정하고, 그 외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으로 인정한다.

② 학과배정 학과·전공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학점 인정 내역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학과배정 학과·전공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내역서를 해당 학생에게 사본으로 교부하고, 수강 지도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비교과프로그램의 이수) ① 공학대학 무전공학과 소속 학생은 교과프로그램 외에 학과장이 정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비교과프로그램의 이수기준은 각 프로그램별 별도기준에 의한다.

제13조(전자적 처리) 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사무는 이 대학교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이 대학교의 시스템에서 유지 및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 호, 2024.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